

5인 미만 사업장의 산업안전 규제 순응 실태

이관형[†] · 이경용 · 손두익 · 서남규 · 서광국* · 오지영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 *한국산업안전공단
(2003. 6. 18. 접수 / 2003. 11. 10. 채택)

Compliance of Employer and Employee with Occupational Safety Regulation in Small Sized Enterprises of under 5 Employees

Kwan-Hyung Yi[†] · Kyung-Yong Rhee · Dooik Sohn · Nam-Kyu Suh

Kwang-Guk Seo* · Ji-Young Oh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Research Institute, KOSHA

*Korea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gency

(Received June 18, 2003 / Accepted November 10, 2003)

Abstract : This study is planned to investigate the compliance of small sized enterprises of under 5 employees directed by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Act. Occupational safety regulation can be required for employer and employee to comply because that all members of workplace should be involved to protect worker's health. When all members of workplace comply with safety regulation, effectiveness of regulation will be realized as expectation. The study subject is composed of three groups as 501 employers, 501 employees of small sized enterprises of under 5 employees and 107 safety inspectors sampled by stratified random sampling for comparison. Data for analysis is collected from each sample using interview with structured questionnaires. Compliance is measured by 5 point scale composed by 8 sub items such as general perception, understanding, clearness, necessity, relevancy, implementation, penalty, and general compliance of the regulation. Among sub items of employer's compliance, the level of perception of regulation, necessity of regulation, relevancy of penalty are differentiated among three groups. The level of all 8 items of employee's compliance also differentiated among three groups. These results show that strategies for ensuring the same level of compliance among three groups will be needed through education, training and evaluation of regulation and feedback.

Key Words : occupational safety regulation, compliance, small sized enterprises under 5 employee

1. 서 론

우리나라는 과거 “산업육성”이라는 대명제를 위해 정부 주도의 계획, 명령, 통제적 경제사회의 틀로 시장(market)을 조정하고 제한하여 왔다. 그런데, 이는 특혜시비와 같은 정치적 변수에 의해 각종의 불합리한 규제를 만들게 하였으며, 경직적이고 획일적인 각종의 간섭과 규제를 파생시키게 하였다. 그러나 1970년대 석유파동으로 발생한 세계경제의 위기 이후 정부의 각종규제 및 개입에 따른 폐해를 시정하기 위해, 규제개혁을 본격화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규제개혁은 규제의 철폐 또는 완화, 개별적 규제의 질 개선 등에만 한정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규제개혁은 국민과 기업의 편의 및 공익증대라는 궁극적인 목표달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성과 지향적이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순응 친화적(compliance-friendly) 규제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여기서 순응 친화적 규제개혁이란 전통적인 통제적이고 표준화된 방식과는 달리 동태성, 유연성, 투명성, 시장원리 존중 등을 기반으로 하는 효율적인 규제체계를 설계·구축하여 규제순응(regulatory compliance)을 확보하는 것을 의미한다.

규제 순응도를 낮추는 요인으로 법률의 복잡성, 법과 규제의 목적에 대한 사회 신뢰성이 결여, 절차

[†]To whom correspondence should be addressed.
khyi@korea.com

적 불공정, 높은 규제 순응 비용, 집행실패와 저지의 실패, 집행실패와 조치의 실패, 집행실패와 설득의 실패, 전반적인 사회의 실패 등이 있을 수 있다(Braithwaite, 1993)¹⁾. 또한 실현될 목표의 잘못된 정의나 규제에 대한 설계의 실패, 규제 집행의 실패, 규제 집행기관인 정부와 법치주의에 대한 신뢰도 저하에 따른 실패 등이 있을 수 있다. 규제 설계가 잘못된 경우는 규제순응의 비용이 너무 높다거나, 규제가 요구하는 사항이 너무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렵거나, 규제가 지나치게 법률 형식에 의존하고 있다거나 다른 정부의 정책이나 규제 간에 마찰과 갈등이 존재하는 등 내적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들이다. 또한 규제 집행의 실패는 크게 규제 순응에 대한 감시의 실패와 규제 집행에 대한 절차상의 실패 등이 있다. 또한 규제에 대한 인지도가 낮으면 순응도가 낮아지고, 규제 순응의 비용과 부담이 클 경우 지체요인으로 작용한다. 규제 집행의 측면에서도 규제수단과 도구가 목적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규제 순응도는 낮아지게 된다(OECD, 1999; 2000)²⁻⁴⁾. 이상에서와 같이 규제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피(被)규제집단과 규제집행집단을 포함하여 규제 내용과 규제 절차 등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되고 일관된 상태로 운용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일반적인 목적은 순응 친화적 규제개혁 성공의 밑거름이 되는 규제순응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적 기본방향 및 전략을 체계적으로 모색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OECD에서 발간한 각종 보고서, 규제순응과 관련된 외국학술논문 및 국내의 관련연구들을 통해 규제순응과 관련된 개념 및 우리나라의 적용에 따른 중요 결정요인을 추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규제순응 실태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의 확대 시행(2001년 8월)에 따른 규제집행 공무원과 피(被)규제집단인 근로자 사업주에의 영향 조사결과를 통해 분석하였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규제분야에서의 심도 있는 분석을 위해, 이중 조사 결과 중에서 사업주의 안전상의 조치의무, 근로자의 준수사항에 대해 한정하여 살펴 보았다.*1)

*1) 사업주의 보건상의 조치 의무, 유해·위험한 기계·기구 및 설비 등의 검사 의무, 물질안전보건정보의 작성·비치, 작업환경 측정의무, 건강진단·특수건강진단 등의 항목에 대해서도 측정하였으나 본 논문에서는 사업주의 안전상의 의무, 근로자의 준수사항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2. 연구방법

규제순응 연구방법에는 크게 (1) 전통적 억제 접근방법, (2) 제한적 합리성 접근방법, (3) 비공식적 억제 및 체면손상 접근방법, (4) 정당성 유지 접근방법, (5) 상호신뢰 접근방법의 다섯 가지가 있다. 이러한 연구방법을 바탕으로 OECD에서 실시한 규제순응도 연구내용을 바탕으로 규제 순응에 대한 측정 범주를 아래와 같이 하위 범주로 재구성한 후 관련 범주의 세부 측정도구를 개발하여 조사하였다. 규제 순응을 위해서는 규제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며(규제 인지), 규제의 내용을 알고 있는 경우에도 규제가 적절하고 필요한지 등에 대한 동의가 필요하다(규제 인정). 이러한 규제 내용의 적절성과 동의가 바탕이 된 후에 규제에 대한 순응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규제에 대한 순응은 최종적으로 규제 순응의 실천이나 미실천이 벌칙과 규제 집행의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규제 준수). 이와 같은 일련의 행동 과학적 인지, 태도, 실천 등의 관련 하위 범주를 개별적으로 측정하여 규제 순응도를 알아보았다.

- 규제 인지(동의 정도를 5점 척도로 측정)
 - 규제 인지도 : 안전상 조치의무(근로자 준수사항)에 대해 잘 알고 있다.
 - 규제 이해도 : 안전상 조치의무(근로자 준수사항) 내용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다.
 - 규제내용의 명확성 : 안전상 조치의무(근로자 준수사항)의 법적 규정이 명확하다.
- 규제 인정(동의 정도를 5점 척도로 측정)
 - 규제 필요성 : 안전상 조치의무(근로자 준수사항)가 반드시 필요하다.
 - 규제 수준 및 내용의 적절성 : 안전상 조치의무(근로자 준수사항)에 따른 규제의 준수 및 내용이 적절하다.
- 규제 준수(동의 정도를 5점 척도로 측정)
 - 규제 집행도 : 안전상 조치의무(근로자 준수사항) 미준수 사업장(근로자)에 대한 법 집행을 잘 이루어지고 있다.
 - 규제 벌칙 적절성 : 안전상 조치의무(근로자 준수사항) 미준수에 따른 처벌의 수준이 적절하다.
 - 규제 준수도 : 우리 사업장에서는 안전상 조치의무(근로자 준수사항)를 준수하고 있다.

규제 순응에 대한 세부 항목들을 설문지로 구성

한 후 하위 범주별 개별 설문을 바탕으로 2002년 8월 한 달간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규제순응도가 낮은 경우 구체적인 미준수 사유들에 대해서는 주관식으로 기입하도록 하여 측정도구를 보완하였다. 조사대상은 피규제 집단에 대해 2001 고용보험가입 사업장중 5인 미만 사업장에서 501개소를 표본 추출하여 사업주, 근로자 각각 501명을 조사하였으며, 집행공무원은 노동부 지방노동청 및 사무소의 산업안전감독관 107명을 조사하였다.

규제 순응도에 대한 하위 범주의 평균값이 응답자 집단간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평균차 검증 방법인 분산분석(Analysis of Variance: F test)을 이용하였으며, 제조업종과 비제조업종을 구분하여 사업주와 근로자 집단간 평균차 검증과 사업주와 근로자 및 산업안전감독관 간의 평균차 검증을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3.1. 표본의 일반적인 특성

지역별로 구분하기 위하여 표본추출을 한 지역에서 편중되어 추출하지는 않았다. 또한 제조업과 비(非)제조업을 구분하였지만 제조업에 치중한 경향이 있는데, 이는 조사항목 자체가 제조업보다는 비(非)제조업에 관련성이 적다고 보았기 때문이다(Table 2).

Table 1. Distribution of the study subject, sample size and sampling method

구 분	대 상	
	被규제집단	집행공무원
모집단	2001 고용보험가입 사업장(493,019개)	노동부 지방노동청 및 사무소
표본크기	사업장 501개소 (사업주, 근로자 각각,501명)	산업안전감독관 107명
표본 추출법	층화비례확률추출법	무작위 추출조사

Table 2. Distribution of respondents by sample, region, and industry

구 분		제조업		非제조업		합 계
		수도권	비수도권	수도권	비수도권	
被규제 집단	사업주	238(59%)	159(41%)	52(50%)	52(50%)	501(50%)
	근로자					501(50%)
	합계	397(79%)		104(21%)		1,002(100%)
집행 공무원	산업안전 감독관	수도권:29(27%), 비수도권:78(73%)				107(100%)

* The national capital area include Seoul, Kyunggi and Inchon. Non national capital area include other regions excluding Cheju

3.2. 사업주의 안전상 조치의무 순응도

산업안전 보건법상의 사업주의 안전상의 의무조치의 의미는 사업주가 사업을 행함에 있어서 발생할 수도 있는 유해 및 위험으로부터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의무조치라 할 수 있다. 구체적 규제내용은 사업주가 위험 설비, 위험물질의 취급, 불량한 작업, 위험우려가 있는 작업등에 기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방지 안전조치를 해야 할 의무를 지우고 있다.

규제의 인지도는 전체적으로 양호하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내용적으로 보면 근로자보다는 사업주가 다소 양호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제조업과 비(非)제조업의 차이는 크지 않았다. 규제의 수준 및 법적 내용의 적절성 부문에 있어서도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공감하고 있지만, 필요성 측면에서는 제조업이 비(非)제조업보다 더 공감하는 부분이 약간 높게 나타났다. 규제집행과 벌칙의 적절성에 대해서도 상당부분 긍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법칙의 적절성에 있어 제조업보다는 비(非)제조업이 낮게 나타났다. 그리고 규제 필요성 인식을 비교한 결과 다소 집행공무원의 필요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피(被)규제집단과 집행공무원간의 업체의 준수도 인식을 비교한 결과 업체는 잘 지키고 있다고 여기는 반면 집행공무원은 잘 지켜지지 않는다고 해 규제 당사자간에 인식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결과로 보아 안전상 조치의무가 대부분 제조업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비(非)제조업종에 대한 안전상 조치 사항을 보다 적극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규제의 필요성은 준수 의무가 있는 사업주보다 집행공무원인 산업안전감독관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규제 순응에 대한 장애가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끝으로 규제 준수에 대한 인식에서도 차이를 보여 규제 준수도에 대한 평가 기준이 집행자와 준수자 사이에서 다르게 설정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된다. 결국 규제 준수도를 높이고 안전상 조치 의무에 대한 순응도를 높이기 위해 이상과 같은 차이를 줄이기 위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업주가 안전상 조치의무를 미준수하는 사유에 대해 집행공무원은 사업주의 인식부족(41.8%), 재정적 문제(20%), 낮은 의식수준(18.2%)등의 순으로 지적했으나, 사업주들은 재정적인 문제(35.7%)와 규정

Table 3. Comparative analysis of the evaluation of three sample groups about the employer's compliance with regulation by the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act

구 분		제 조 비(非) 제 조					집단간분석							
		사업주(A)		근로자(B)		사업주(C)	근로자(D)		산업 안전 감독관(E)		T-test		F-test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A*B)	(C*D)	(A*B*E)	(C*D*E)
규제 인지	규제 인지도	평균	3.64	3.36	3.64	3.13	-	-	-	-	4.00*	3.04*	-	-
		표준편차	0.827	0.968	0.902	1.067	-	-	-	-	-	-	-	-
	규제 이해도	평균	3.54	3.32	3.63	3.26	3.94	-	-	-	2.92*	1.91*	17.0147*	8.2059*
		표준편차	0.876	1.019	0.848	1.201	0.989	-	-	-	-	-	-	-
규제 내용명확성	평균	3.47	-	3.32	-	3.42	-	-	-	-	-	-	-	
	표준편차	0.873	-	0.888	-	0.836	-	-	-	-	-	-	-	
규제 인정	규제 필요성	평균	3.77	4.01	3.71	3.98	4.41	-	-	-	-3.55*	-1.62	24.5115*	17.0762*
		표준편차	0.884	0.853	0.946	0.931	0.756	-	-	-	-	-	-	-
	규제 수준 및 내용적절성	평균	3.46	-	3.45	-	3.13	-	-	-	-	-	-	-
		표준편차	0.765	-	0.776	-	0.817	-	-	-	-	-	-	-
규제 준수	규제 집행도	평균	3.42	-	3.27	-	2.92	-	-	-	-	-	-	-
		표준편차	0.741	-	0.782	-	0.87	-	-	-	-	-	-	-
	규제 벌칙 적절성	평균	3.48	3.31	3.39	3.32	2.77	-	-	-	2.85*	0.52	32.6297*	13.7037*
		표준편차	0.718	0.826	0.756	0.907	1.017	-	-	-	-	-	-	-
규제 준수도	평균	3.86	3.78	3.75	3.67	2.6	-	-	-	1.32	0.50	113.1320*	62.7585*	
	표준편차	0.711	0.885	0.76	0.896	0.787	-	-	-	-	-	-	-	

* p < 0.05

※ 빈칸은 해당 설문 응답 대상자에게 적절하지 않아 조사에서 제외된 항목들이며 집단간 비교 분석결과인 test 결과에서도 제외되었음.

내용 미숙지(21.4%)를 가장 많이 지적하여 이들의 인식 차이를 확인 할 수 있다. 안전상 조치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 준수 의무를 갖고 있는 사업주와 집행공무원인 산업안전감독관 간의 차별성은 규제 순응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 집행의 효율성을 감소시키게 된다. 이와 같은 차별성을 없애기 위하여 안전상 조치의무가 있는 사업주의 미준수 사유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사업주의 안전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재정적 지원이나 규제의 내용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 전략 등이 마련되는 것이 필요하다.

3.3. 근로자의 준수사항 순응도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근로자의 의무조치의 의미는 산업현장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하나의 축인 근로자가 사업주가 행한 안전상, 보건상 조치들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산업현장의 안전보건은 실익이 없음을 나타낸다. 내용면에서도 근로자의 의무사항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 산업재해의 방지에 관한 조치를 준수해야 함을 말한다.

규제의 인지를 나타내는 규제 인지도와 규제 이

해도 그리고 규제 내용의 명확성 등은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응답 경향이 나타나 전반적인 규제 인지 수준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사업주와 근로자를 비교한 결과 사업주가 근로자보다 규제 인지도와 규제 이해도에서 근로자보다 사업주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규제 인정을 보여주는 규제의 필요성은 사업주와 근로자간에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규제 준수를 나타내는 규제 벌칙의 적절성과 규제 준수도 중에서 제조업종에서 규제 준수도에서만 사업주와 근로자 간의 유의한 차이를 보여 근로자의 준수에 대한 평가는 사업주에서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사업주와 근로자는 모두 규제를 준수해야 하는 의무 이행자의 위치에 있는 반면 산업안전감독관은 규제를 집행하는 위치에 있어 이러한 위치의 차이가 규제 순응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가져오는지 알아보았다.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규제 순응의 하위 범주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차이의 대부분은 산업안전감독관의 인식이 이해도와 필요성 등에서는 사업주나 근로자보다 높게 나타난 반면 규제 준수도에서는 사업주나 근로자들에 비하여 낮게 평가하

Table 4. Comparative analysis of the evaluation of three sample groups about the employee's compliance with regulation by the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act

구 분		제 조		비(非) 제 조		산업 안전 감독관(E)	집단간분석				
		사업주 (A)	근로자 (B)	사업주 (C)	근로자 (D)		t-test		F-test		
							(A*B)	(C*D)	(A*B*E)	(C*D*E)	
규제 인지	규제 인지도	평균	3.77	3.52	3.55	3.21	-				
		표준편차	0.742	0.88	0.835	0.894	-	4.28*	2.84*	-	-
	규제 이해도	평균	3.67	3.43	3.53	3.19	3.84	3.94*	2.95*	13.14*	15.20*
규제 인정	규제 내용명확성	평균	3.54	-	3.32	-	3.14	-	-	-	-
		표준편차	0.818	-	0.831	-	0.926	-	-	-	-
	규제 필요성	평균	3.84	3.78	3.59	3.55	4.23	0.95	0.42	12.12*	24.52*
규제 준수	규제 집행도	평균	3.61	-	3.5	-	2.86	-	-	-	-
		표준편차	0.72	-	0.78	-	0.96	-	-	-	-
	규제 별책 적절성	평균	3.51	-	3.19	-	2.51	-	-	-	-
규제 준수	규제 별책 적절성	표준편차	0.72	-	0.86	-	0.88	-	-	-	-
		평균	3.58	3.49	3.22	3.31	2.53	1.60	-0.87	76.69*	30.25*
	표준편차	0.73	0.81	0.82	0.64	0.89	-	-	-	-	
규제 준수도	평균	3.82	3.7	3.59	3.41	2.49	2.60*	1.68	132.29*	67.41*	
	표준편차	0.73	0.81	0.74	0.78	0.69	-	-	-	-	

* p < 0.05

※ 빈칸은 해당 설문항목이 응답 대상자에게 적절하지 않아 조사에서 제외된 항목들이며 집단간 비교 분석결과인 test 결과에서도 제외되었음.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규제 집행자와 순용자 간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앞서 사업주의 안전상 조치 의무에 대한 규제 순용에서와 같이 근로자의 규제 순용도 이러한 차이를 줄임으로서 규제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근로자가 준수사항을 미준수하는 사유에 대해 집행공무원은 근로자의 인식부족(42.9%)과 규정내용 미숙지(14.3%)를 가장 많이 지적하였으며, 근로자는 규정내용 미숙지(44.4%)를 가장 많이 지적하였다. 결국 근로자의 규제 순용을 높이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규제 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교육하는 전략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결과는 사업주의 안전상 조치의무에 대한 규제 순용에서도 동일한 결과이다. 따라서 사업주와 근로자의 안전상 조치에 대한 규제 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두 집단을 대상으로 한 보다 적극적인 교육 홍보 전략이 필요하다.

4. 결 론

5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의 규제 순용

도를 사업주의 안전상 조치의무와 근로자의 준수의 무 측면에서 알아본 결과 피(被)규제 집단인 사업주와 근로자들이 인식하고 있는 규제 인지도와 규제 인정도 그리고 규제 준수도는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이었다. 반면 규제집행을 담당하는 산업안전감독관의 경우, 규제 인정도가 월등히 높은 수준을 보여 규제 집행 공무원으로서의 필요성 인식 수준은 높았으나, 사업주와 근로자 등 피(被)규제집단의 준수도에 대한 평가는 매우 낮게 나타났다. 이와 같이 집행공무원과 피(被)규제집단과의 괴리는 규제의 품질관리가 시급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규제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피(被)규제 집단의 규제 준수도를 높이기 위한 직접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피(被)규제 집단이 스스로 인식하고 있는 미준수 사유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전략이 마련되어야 한다. 연구결과에서 본 바와 같이 피(被)규제 집단의 규제 준수도가 낮은 사유는 전반적으로 내용을 잘 몰라서인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규제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해서이다. 결국 피(被)규제 집단을 대상으로 무엇을 어떻게 규제하는 것인지에 대한 교육

과 홍보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규제집행자와 피(被)규제 집단이 서로 다른 평가를 내리고 있는 점은 상호간에 평가 기준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차이는 규제 집행이나 준용의 수준이 다르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으로 규제의 효과를 높이는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규제 준용에 대한 인식의 기준을 동일하게 맞추기 위한 적절한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규제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

앞으로 규제개혁이 질 개선 측면으로 나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규제집단과 피(被)규제집단과의 괴리는 국민의 편익 증대 및 공공이익의 확대라는 규제의 질적 개선을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규제현장의 문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분석하여, 규제준용 확보를 위해 순차적 접근전략을 수립·실시하고, 규제준용 정도를 지속적으로 평가함으로써 지속적인 규제 관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규제준용 확보를 위한 기반조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규제정책의 집행가능성 제고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규제 정책의 내용 및 결정과정이 준용 친화적이어야 한다.

규제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피(被)규제 집단에 대한 전략과 함께 집행공무원에 대한 전략도 요구된다. 특히 규제 준용도를 높이기 위한 기본 조건은 집행관료의 의지 및 노력으로부터 출발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규제집행 관료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이 매우 중요하다.

참고문헌

- 1) Braithwaite, John, "Improving Regulatory Compliance: Strategies and Practical Applications in OECD Countries", PUMA Occasional Papers, Regulatory Management and Reform Series No.3, OECD, 1993.
- 2) OECD, "The Preliminary Report on the State of Regulatory Compliance (The PUMA Regulatory Quality Review: Review of Japan and Mexico)", PUMA/REG(98), 1998.
- 3) OECD, "The State of Regulatory Compliance: Supporting aterials", PUMA/REG(99)/ANN, 1999.
- 4) 양준석 외, "OECD규제개혁연구 규제준용과 효율성", KIEP OECD연구시리즈 01-01, 2000.